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4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7. 05.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7. 1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2022. 7. 31.자로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위·수탁 종료에 따라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설 위탁 운영에 앞서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3(시설의 위탁)

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마.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위탁)

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4. 주요내용

가. 시설유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나. 시설현황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규모	입소정원	비고
고성군치매 전문요양원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25	2000.11.01	지하1층,지상2층 1,727.28㎡	64	

다. 현 위탁자 현황: 없음

라. 위탁개요

- 1) 위탁운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 2) 위탁사무내용: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
- 3)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4) 운영재원: 장기요양급여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 5)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 원)

위탁연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1,588,800		
2023년 ~2024년	500,000	- 고성군치매요양원 내외부 개보수 1식 · 설계비 및 설비(소방·전기·배관)보수: 298,320 · 창호 및 각종 출입문 보수: 27,000 · 방수·도장 및 균열 보수: 174,680	
2024년	214,88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03천 원×30명×12월 = 109,08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5년	216,32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07천 원×30명×12월 = 110,52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6년	217,4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10천 원×30명×12월 = 111,6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7년	219,2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15천 원×30명×12월 = 113,4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2028년	221,000	-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 320천 원×30명×12월 = 115,200 - 종사자수당: 1인당 연간 2,600천 원×40명 = 104,000 - 사회복지사수당: 30천 원×5명×12월 = 1,800	

※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충당

※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시행 연도 변경 가능

5. 기대효과

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시설운영 정상화

6.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계획

- 2023. 7. 기능보강 예산 제2회 추경 반영
- 2023. 7.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7. 위탁기관 선정·심사
- 2023. 9. 위탁운영 계약 체결

7. 참고사항

- 가.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
- 다. 관계법령: 붙임 3

8.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동의안 제출 배경(필요성)

- 2022.7.31. 폐지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재개하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동의안 내용 검토

-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타당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치매전문요양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보호·돌봄 시설로, 서비스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서비스 등 사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지식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적정성

-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1.1.~2028.12.31.(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함.

○ 민간위탁운영 소요 예산의 적정성

-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로 충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입소자 생계비(국도비보조), 종사자수당(도비보조),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군비)을 보조금으로 교부함.

다. 종합의견

- 위와 같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10. 토 론 : 없음.

11.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 가결함.